

※ 이 상품요약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상품 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의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p>①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가입금액형) 및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과 2종(표준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의 1형(기납입P플러스형)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과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li> <li>- 이 상품의 2형(가입금액형)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li> </ul> <p>②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전환일시금으로 하여 이 보험계약을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전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부터 80세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p> <p>※ 용어의 정의 및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은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li> <li>▪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li> <li>▪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기간 중 해지(울)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습니다.</li> <li>▪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형” 상품과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li> </ul> <p>(예시)</p> <p>[기준: 남자 40세, 종신, 1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p> <p><b>1형 (기납입P플러스형)</b></p> <p>(1) 납입보험료 비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보험종류</th> <th style="width: 35%;">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th> <th style="width: 35%;">표준형</th> </tr> </thead> <tbody> <tr> <td>(무)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td> <td>509,000</td> <td>743,000</td> </tr> <tr> <td>합계보험료</td> <td>509,000</td> <td>743,000</td> </tr> </tbody> </table> <p>※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보험료입니다.</p> <p>(2)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 비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p>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표준형	(무)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	509,000	743,000	합계보험료	509,000	743,000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표준형							
(무)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	509,000	743,000							
합계보험료	509,000	743,000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은 무엇인가요?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표준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6,108,000	0	0.0%	8,916,000	4,288,000	48.0%
2년	12,216,000	0	0.0%	17,832,000	12,872,000	72.1%
3년	18,324,000	0	0.0%	26,748,000	21,652,000	80.9%
5년	30,540,000	0	0.0%	44,580,000	39,806,000	89.2%
9년	54,972,000	0	0.0%	80,244,000	77,433,000	96.4%
10년	61,080,000	61,080,000	100.0%	89,160,000	87,091,000	97.6%
15년	61,080,000	61,080,000	100.0%	89,160,000	95,213,000	106.7%
20년	61,080,000	63,860,580	104.5%	89,160,000	104,056,000	116.7%
30년	61,080,000	75,638,376	123.8%	89,160,000	123,277,000	138.2%
40년	61,080,000	88,015,499	144.0%	89,160,000	143,477,000	160.9%
50년	61,080,000	98,738,676	161.6%	89,160,000	160,979,000	180.5%
60년	61,080,000	106,684,935	174.6%	89,160,000	173,948,000	195.0%
70년	61,080,000	114,883,863	188.0%	89,160,000	187,328,000	210.1%
71년	61,080,000	115,954,350	189.8%	89,160,000	189,160,000	212.1%

-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2형 (가입금액형)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표준형
(무)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2형	335,000	417,000
합계보험료	335,000	417,000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 보험료입니다.

(2)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표준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4,020,000	0	0.0%	5,004,000	2,390,000	47.7%
2년	8,040,000	0	0.0%	10,008,000	7,190,000	71.8%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은 무엇인가요?

3년	12,060,000	0	0.0%	15,012,000	12,103,000	80.6%
5년	20,100,000	0	0.0%	25,020,000	22,267,000	88.9%
9년	36,180,000	0	0.0%	45,036,000	43,374,000	96.3%
10년	40,200,000	40,200,000	100.0%	50,040,000	48,806,000	97.5%
15년	40,200,000	42,059,105	104.6%	50,040,000	52,883,000	105.6%
20년	40,200,000	45,589,547	113.4%	50,040,000	57,322,000	114.5%
30년	40,200,000	53,263,626	132.4%	50,040,000	66,971,000	133.8%
40년	40,200,000	61,328,209	152.5%	50,040,000	77,111,000	154.0%
50년	40,200,000	68,315,128	169.9%	50,040,000	85,896,000	171.6%
60년	40,200,000	73,492,686	182.8%	50,040,000	92,406,000	184.6%
70년	40,200,000	78,834,875	196.1%	50,040,000	99,123,000	198.0%
71년	40,200,000	79,532,374	197.8%	50,040,000	100,000,000	199.8%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 일 기준 금액입니다.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당시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90세 이하인 경우
- 보험료납입기간이 지난 경우(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 최초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 당시 적립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②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옵션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최초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의 보험가입금액의 90%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5년이상 20년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기간 동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매년 감액할 금액으로 정하고, 매년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여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매년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text{‘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 기간(연단위)’}}$$

-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은 최초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기간 동안 매년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최초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동일)에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때부터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은 종료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마지막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지원, 질병관리교육, 가족지원 등 토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AIA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가입자격요건

###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순수보장형
1형(기납입P플러스형)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I	
	2종: 표준형	
2형(가입금액형)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I	
	2종: 표준형	

※ 다만,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1종만 가입 가능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기납입P플러스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2종 (표준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신	10년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월납
	15년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20년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4세	만15세 ~ 63세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2형(가입금액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2종 (표준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신	10년납	만15세 ~ 63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월납
	15년납	만15세 ~ 61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20년납	만15세 ~ 61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 3. 가입한도

주계약의 가입한도는 1형(기납입P플러스형)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30억원, 2형(가입금액형)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99억원입니다.

###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 (기납입P플러스형)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주계약: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2형 (가입금액형)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내용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계약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형(기납입P플러스형)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li> <li>• 2형(가입금액형) : 보험가입금액의 100%</li> </ul>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 ※ 장애분류표 및 장애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6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6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로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입원일수는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로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만5천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로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요양병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6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6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사용일수는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만5천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6) 선지급서비스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지급 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약면책조건을 부가하고, 특약 면책기간 중 약관에서 지정한 각호의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0)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구분		지급 사유	지급 내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상속연금형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이 특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

-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약으로 납입(전환)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 이 특약의 연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특약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며, 특약 전환 당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이 연금인 경우 이 특약의 연금사망률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연금 사망률을 적용합니다.

###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험료 산출기초

### 1. 보험료 적용이율

보험료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 할인을 보험료 적용이율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험료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험료 적용이율은 2.5%입니다.

### 2.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31	0.00020
40세	0.00063	0.00047
60세	0.00357	0.00142

### 3. 적용해지율에 관한 사항

적용해지율이란,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해지율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연 0.99%~14.0%입니다.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등 안내

우리 AIA생명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약환급금 예시

(1) 1형 1종 (기납입P플러스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27,000	0	0.0%	1,320,000	0	0.0%
6개월	3,054,000	0	0.0%	2,640,000	0	0.0%
9개월	4,581,000	0	0.0%	3,960,000	0	0.0%
1년	6,108,000	0	0.0%	5,280,000	0	0.0%
2년	12,216,000	0	0.0%	10,560,000	0	0.0%
3년	18,324,000	0	0.0%	15,840,000	0	0.0%
5년	30,540,000	0	0.0%	26,400,000	0	0.0%
9년	54,972,000	0	0.0%	47,520,000	0	0.0%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0년	61,080,000	61,080,000	100.0%	52,800,000	52,800,000	100.0%
15년	61,080,000	61,080,000	100.0%	52,800,000	52,800,000	100.0%
20년	61,080,000	63,860,580	104.5%	52,800,000	55,421,571	104.9%
30년	61,080,000	75,638,376	123.8%	52,800,000	66,643,874	126.2%
40년	61,080,000	88,015,499	144.0%	52,800,000	79,653,822	150.8%
50년	61,080,000	98,738,676	161.6%	52,800,000	92,010,681	174.2%
60년	61,080,000	106,684,935	174.6%	52,800,000	100,369,529	190.0%
70년	61,080,000	114,883,863	188.0%	52,800,000	107,848,377	204.2%
남: 71년 여: 73년	61,080,000	115,954,350	189.8%	52,800,000	109,903,246	208.1%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 1형 2종 (기납입P플러스형 표준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229,000	0	0.0%	1,914,000	0	0.0%
6개월	4,458,000	93,000	2.0%	3,828,000	69,000	1.8%
9개월	6,687,000	2,190,000	32.7%	5,742,000	1,863,000	32.4%
1년	8,916,000	4,288,000	48.0%	7,656,000	3,658,000	47.7%
2년	17,832,000	12,872,000	72.1%	15,312,000	11,000,000	71.8%
3년	26,748,000	21,652,000	80.9%	22,968,000	18,508,000	80.5%
5년	44,580,000	39,806,000	89.2%	38,280,000	34,040,000	88.9%
9년	80,244,000	77,433,000	96.4%	68,904,000	66,288,000	96.2%
10년	89,160,000	87,091,000	97.6%	76,560,000	74,584,000	97.4%
15년	89,160,000	95,213,000	106.7%	76,560,000	81,491,000	106.4%
20년	89,160,000	104,056,000	116.7%	76,560,000	89,183,000	116.4%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0년	89,160,000	123,277,000	138.2%	76,560,000	107,154,000	139.9%
40년	89,160,000	143,477,000	160.9%	76,560,000	127,985,000	167.1%
50년	89,160,000	160,979,000	180.5%	76,560,000	147,772,000	193.0%
60년	89,160,000	173,948,000	195.0%	76,560,000	161,158,000	210.4%
70년	89,160,000	187,328,000	210.1%	76,560,000	173,134,000	226.1%
남: 71년 여: 73년	89,160,000	189,160,000	212.1%	76,560,000	176,560,000	230.6%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3) 2형 1종 (가입금액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5,000	0	0.0%	912,000	0	0.0%
6개월	2,010,000	0	0.0%	1,824,000	0	0.0%
9개월	3,015,000	0	0.0%	2,736,000	0	0.0%
1년	4,020,000	0	0.0%	3,648,000	0	0.0%
2년	8,040,000	0	0.0%	7,296,000	0	0.0%
3년	12,060,000	0	0.0%	10,944,000	0	0.0%
5년	20,100,000	0	0.0%	18,240,000	0	0.0%
9년	36,180,000	0	0.0%	32,832,000	0	0.0%
10년	40,200,000	40,200,000	100.0%	36,480,000	36,480,000	100.0%
15년	40,200,000	42,059,105	104.6%	36,480,000	38,233,738	104.8%
20년	40,200,000	45,589,547	113.4%	36,480,000	41,519,874	113.8%
30년	40,200,000	53,263,626	132.4%	36,480,000	49,195,930	134.8%
40년	40,200,000	61,328,209	152.5%	36,480,000	58,094,734	159.2%
50년	40,200,000	68,315,128	169.9%	36,480,000	66,546,826	182.4%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60년	40,200,000	73,492,686	182.8%	36,480,000	72,264,278	198.0%
70년	40,200,000	78,834,875	196.1%	36,480,000	77,379,810	212.1%
남: 71년 여: 73년	40,200,000	79,532,374	197.8%	36,480,000	78,785,340	215.9%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 2형 2종 (가입금액형 표준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251,000	0	0.0%	1,146,000	0	0.0%
6개월	2,502,000	44,000	1.7%	2,292,000	43,000	1.8%
9개월	3,753,000	1,217,000	32.4%	3,438,000	1,118,000	32.5%
1년	5,004,000	2,390,000	47.7%	4,584,000	2,193,000	47.8%
2년	10,008,000	7,190,000	71.8%	9,168,000	6,593,000	71.9%
3년	15,012,000	12,103,000	80.6%	13,752,000	11,094,000	80.6%
5년	25,020,000	22,267,000	88.9%	22,920,000	20,413,000	89.0%
9년	45,036,000	43,374,000	96.3%	41,256,000	39,791,000	96.4%
10년	50,040,000	48,806,000	97.5%	45,840,000	44,785,000	97.6%
15년	50,040,000	52,883,000	105.6%	45,840,000	48,529,000	105.8%
20년	50,040,000	57,322,000	114.5%	45,840,000	52,700,000	114.9%
30년	50,040,000	66,971,000	133.8%	45,840,000	62,443,000	136.2%
40년	50,040,000	77,111,000	154.0%	45,840,000	73,738,000	160.8%
50년	50,040,000	85,896,000	171.6%	45,840,000	84,466,000	184.2%
60년	50,040,000	92,406,000	184.6%	45,840,000	91,723,000	200.0%
70년	50,040,000	99,123,000	198.0%	45,840,000	98,216,000	214.2%
남: 71년 여: 73년	50,040,000	100,000,000	199.8%	45,840,000	100,000,000	218.1%

-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남자/여자, 40세)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남자	여자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1종 (기납입P플러스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종신	20년	남자	105.2%	10,000 만원
			여자	106.9%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1형2종 (기납입P플러스형 표준형)	종신	20년	남자	98.7%	
			여자	99.8%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2형1종 (가입금액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	종신	20년	남자	103.3%	
			여자	105.3%	
무배당 AIA 더해주는 종신보험 2형2종 (가입금액형 표준형)	종신	20년	남자	98.0%	
			여자	99.6%	

※ 무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상품자체가 비표준체 대상 상품의 경우, 표준체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